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9.

발 의 자 : 문금주 · 이주희 · 강준현
권향엽 · 정진욱 · 진성준
조인철 · 박해철 · 박용갑
장종태 · 김남근 · 이용우
오세희 · 임미애 · 손명수
김 윤 · 황명선 · 이광희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과 축산업의 발전,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동물의료 분야의 다변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, 축산·가축방역 등 공익적 분야에서의 수의사 수요 증가로 동물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사의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

본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동물의료 육성·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·시행하도록 함으로써, 변화·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3 신설).
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수의사 수급계획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는 제3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3(수의사 수급계획 등) ①</u>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</u> <u>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</u> <u>한 수의사의 확보와 적절한 공</u> <u>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·</u> <u>시행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</u> <u>사 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</u> <u>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</u> <u>본시책과 중장기 수급추계는</u> <u>제3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과</u> <u>연계하여 수립한다.</u>